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 9월 16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재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8월 30일(월),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 2010년 9월 6일(월)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2010. 6. 8 법률 제10344호)제134조제1항
- 「지방재정법」 (2010. 1. 1 법률 제9926호)제51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1호)제59조

## 5. 보건소 소관

### 1)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8,752,480,000	-	-	8,752,480,000	7,832,920,188	-	919,559,812
보건위생과	1,521,070,000	-	-	1,521,070,000	1,042,201,238	-	478,868,762
지역보건과	5,755,468,000	-	-	5,755,468,000	5,423,844,460	-	331,623,540
의약과	1,401,745,000	-	-	1,401,745,000	1,294,051,570	-	107,693,430
식품안전 추진반	74,197,000	-	-	74,197,000	72,822,920	-	1,374,080

### 2) 세출결산 예산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계	사유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	919,559,812	177,249,370	164,418,707	577,891,735
보건위생과	478,868,762	-	31,351,442	447,517,320
지역보건과	331,623,540	177,249,370	69,043,050	85,331,120
의약과	107,693,430	-	62,960,255	44,733,175
식품안전 추진반	1,374,080	-	1,063,960	310,120

### 3) 식품진흥기금결산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비고
		계(B) (C-D)	조성액 (C)	사용액 (D)		
식품진흥기금	1,242,844,881	△266,403,111	333,997,639	600,400,750	976,441,770	

#### 4) 검토의견

0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7억5,248만원이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89.5%에 해당하는 78억3,292만188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9억1,955만9,812원이 되겠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0.5%로 전년도 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3%, 예산집행 잔액 17.9%,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62.8%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집합교육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등에서 발생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2008년도 33.4%보다 높아진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관련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고위험군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8억8,435만4천원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50.3%에 해당하는 4억4,471만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중 예방접종 및 예방물품 관련 제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예산과다 및 중복지원되어 예산액 1억8,182만5천원 대비 50.3%인 9,151만2,550원,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시약은 예산액 3,500만원 대비 65.4%인 2,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시약 재고분은 전량 보관 중에 있는바, 시약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조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사전협의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시비 보조사업인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예산액 761만6천원 대비 70.0%인 53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로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 후나 퇴원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포구의 경우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이 이비인후과 의원 1개소밖에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저소득층 신생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식품진흥기금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억4,284만4,881원, 2009년도 조성액은 3억3,399만7,639원임, 사용액은 6억40만750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9억7,644만1,770원이 되겠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사용되는 본 기금의 민간융자금 사용액은 3억4천만원으로 2008년도 2억400만원보다 다소 향상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  
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  
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